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19

발의연월일: 2020. 10. 6.

발의자:진선미・아수잔삐・황운하

김영배 · 조오섭 · 송갑석

안호영 · 김민철 · 진성준

김원이 · 김윤덕 · 도종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화계 내에서 현장의 관행 또는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이유로 영화 근로자에게 계약상 합의되지 않은 연출이나 근로를 강요하거나 노동착취 또는 성적인 연출을 강요하는 성희롱·성폭력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개인 프리랜서나 비정규직이 많은 이들의 특성상 피해를 입어도 사건이 쉽게 은폐될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음. 특히최근에는 '미투(#MeToo)운동'으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성폭력 사건들이 드러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근로자들의 근로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영화산업 내 근로환경 실태와 현장 내 불공정행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수립과 영화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불공정행위 조사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영화업자의 영화 촬영 전 성폭력 예방교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 영화진흥기본계획, 영화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영화진흥기금의 사용용도에 표준계약서 권장과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예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3조의7, 제3조의10, 제14조 및 제25조).

법률 제 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의2를 제6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영화산업에서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제3조의7 및 제3조의8을 각각 제3조의8 및 제3조의9로 하고, 제3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조의7(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영화업자는 영화 촬영 전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대한 관리·감독 및 영화산업 내 성 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장제1절에 제3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조의10(실태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공 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개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출석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영화산업의 진흥 또는 영화산업 내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등과 관련된 정책 수립
- 2. 영화산업 또는 영화산업 내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공정성을 현 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행위의 시정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계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영화진흥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 외에 불공정행위를 한 단체 또는 개인을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6호를 제1 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 영화산업에서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 16. 표준계약서 확산 및 영화산업 내 근로환경 개선 제25조제1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영화산업에서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과 관련

된 사업 지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① (생략) 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 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영화산업에서 인권존중 <신 설>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 산 6의2. (생략) 6의3. (현행 제6의2와 같음)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7(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 지조치) ① 영화업자는 영화 촬영 전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폭력 사건을 예 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대한 관리·감독 및 영화산업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제3조의7(직업훈련의 실시) (생 제3조의8(직업훈련의 실시) (현행 략)

제3조의8(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 재) (생략)

<신 설>

따른 조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 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의7과 같음)

제3조의9(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 재) (현행 제3조의8과 같음)

제3조의10(실태조사 등) ① 문화 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 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하거나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 련 법인·단체·개인에게 필요 한 자료의 제출・출석 등 협조 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 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 련 법인 · 단체 ·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 야 한다.

- 1. 영화산업의 진흥 또는 영화 산업 내 영화근로자의 근로환 경 개선 등과 관련된 정책 수 립
- 2. 영화산업 또는 영화산업 내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공정 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 10. (생 략) <신 설>

12. ~ 15. (생략)

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행위의 시정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영 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계자에게 시 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 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영 화진흥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 외에 불공정행위를 한 단 체 또는 개인을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 · 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 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 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1. ~ 10. (현행과 같음)

11. 영화산업에서 인권존중 의 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12.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생략)

② (생략)

제2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 제25조(기금의 용도) ①----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 야 한다.

1. ~ 5의2. (생 략) <u><신 설></u>

6. ~ 12. (생략)

② (생략)

<u>16.</u>	표준계	l약서	확산	및	영화산
(업 내	근로횐	·경 기	l 선	
<u>17.</u>	(현행	제163	호와 🌣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1. ~ 5의2. (현행과 같음) 5의3. 영화산업에서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

6. ~ 12. (현행과 같음)

산과 관련된 사업 지원

② (현행과 같음)